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신·구조문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의2. (생략)</p> <p><u><신설></u></p> <p>3. ~ 11.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p> <p>-----.</p> <p>1. ~ 2의2. (현행과 같음)</p> <p><u>2의3.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와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u></p> <p>3. ~ 11. (현행과 같음)</p>	인프라펀드 내용 반영
<p>제4조(위탁증거금) <u>가입자는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매수대금 전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위탁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u></p>	<p>제4조(위탁증거금) <u>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을 거래소에서 매매하기 위해 위탁할 경우 매수대금 전액에 대한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u></p> <p><u>1. 제8조제1항제2호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u></p> <p><u>2. 제8조제1항제3호의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u></p> <p><u>3. 제8조제1항제4호의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과 투융자신탁의 수익증권</u></p>	인프라펀드 내용 반영 및 자구 수정
<p>제5조(신용거래 등 금지) ① 가입자는 <u>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u> 대하여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p> <p>② 회사는 가입자의 <u>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u> 대한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p>	<p>제5조(신용거래 등 금지) ① ----- <u>제4조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에</u> -----</p> <p>-----.</p> <p>② ----- <u>제4조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에</u> -----</p> <p>-----.</p>	자구 수정

<p>제6조(납입 등) ① 가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회사와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날을 사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약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에는 계좌에 추가금액을 납입할 수 없다.</p> <p>1.2. (생략)</p> <p>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내에 소유한 주택(이하 "연금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이하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같은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하 "주택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이 경우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주택차액의 총 누적금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p> <p><u><신설></u></p>	<p>제6조(납입 등) ① ----- ----- 금액(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총 누적금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 취득가액(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이하 "주택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p> <p>4.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내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거주자로서 같은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연금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이하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p>	<p>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p>
<p>제8조(집합투자증권의 매매)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매입할 수 있다.</p> <p>1.2. (생략)</p>	<p>제8조(집합투자증권의 매매) ① ----- ----- -----</p> <p>1.2. (생략)</p>	<p>인프라펀드 내용 반영</p>

<p>3. <u>부동산투자회사법</u>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u><신 설></u></p> <p>② ~ ④ (생략)</p>	<p>3. 「<u>부동산투자회사법</u>」 _____ _____</p> <p>4. 「<u>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u>」 제41조의8에 따라 상장된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및 투융자신탁의 수익증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배당금 등) 회사는 <u>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한 분배금 및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u> 배당금을 계좌로 지급한다.</p>	<p>제11조(배당금 등) ----- <u>제4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한 분배금 및</u> -----.</p>	<p>자구 수정</p>
<p>제12조(인출 등) ① (생략)</p> <p>② 가입자가 일부 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인출한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③ ~ ⑦ (생략)</p>	<p>제12조(인출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인출할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을 매도할 것</u></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인프라펀드 내용 반영</p>
<p>제16조(계좌해지) ① (생략)</p> <p>② 회사는 가입자의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환매 또는 매도된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제16조(계좌해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3. (생략)</p> <p><u>4. 가입자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항제4호의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을 모두 매도할 것</u></p>	<p>인프라펀드 내용 반영</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제2항제3호의 주식에</u> 대한 배당·신주인수 권리가 발생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 계좌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p>	<p>③ ----- <u>제2항제3호의 주식 및 같은 항 제4호의 주식과 수익증권에</u> ----- -----.</p>	
<p>제18조(계좌의 이체) ① ~ ⑤ (생략) ⑥ 가입자가 일부 금액의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이체한다. 1. ~ 3. (생략) <u><신설></u></p> <p>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3호의 <u>주식에</u> 대한 배당·신주인수 권리가 발생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 계좌 이체가 제한될 수 있다</p>	<p>제18조(계좌의 이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3. (현행과 같음) <u>4.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이체할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을 매도할 것</u> ⑦ ----- <u>주식 및 같은 항 제4호의 주식과 수익증권에</u> ----- -----.</p>	인프라펀드 내용 반영
<p>제19조(연금의 지급) ① ~ ⑤ (생략) ⑥ 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인출한다. 1. ~ 3. (생략) <u><신설></u></p> <p>⑦ (생략)</p>	<p>제19조(연금의 지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3. (현행과 같음) <u>4.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수령할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을 매도할 것</u> ⑦ (현행과 같음)</p>	인프라펀드 내용 반영

<p>제23조(수수료 등) 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u>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또는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u>의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 시 가입자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p> <p>④ 제3항에서 정하는 <u>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또는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u>의 매매거래 위탁 시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가입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p>	<p>제23조(수수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하는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u> -----.</p> <p>④ ----- <u>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하는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u> -----.</p>	<p>인프라펀드 내용 반영 및 자구 수정</p>
<p>제32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가입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u>「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u></p>	<p>제32조(관할법원) ----- ----- <u>「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가입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가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u></p>	<p>공정위 시정요청 사항 반영</p>
<p>제33조(관계법규등 준용) ① <u>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u>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매매거래계좌설정 약관에 따른다.</p> <p>②·③ (생략)</p>	<p>제33조(관계법규등 준용) ① <u>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하는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의</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인프라펀드 내용 반영 및 자구 수정</p>
<p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이 약관은 202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추가</p>